

농촌위기 타개를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국회의장(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희망찬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하여 복지국가 실현과 민생안정에 전념하시고, 특히 농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국회의장(재정경제부장관,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님께 150만 도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정부의 농정실패와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농가부채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소비부진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농가경제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부채로 파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소득보장 없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은 농업의 발전은 가져왔으나 농민의 고통은 증가하는 모순을 가져 왔습니다.

여기에다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농작물 피해와 유가상승에 따른 기름값 인상,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농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또한 수입농산물의 대량유통으로 인해 과일, 채소류, 육류 등의 가격 폭락으로 생산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농가부채는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산물의 최대 수요자인 소비자들도 국산과 수입산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150만 충북도민과 함께 도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의 농촌 위기는 정부의 땀질식,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 농업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농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WTO 선언이후 증가하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진할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속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다.

수입농산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과 무분별한 수입업자들의 단속 대책, 중국 보따리 무역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 농업을 무시하는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상 중지, 불법유통 농산물의 유통대책, 수입농산물 유통대책 및 수입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채무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농민들이 농가부채로 파산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정부는 정책 자금과 상호금융대출금의 2년 상환연기, 특별경영자금지원과 연대보증해소를 위한 농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 대체하는 등의 농가 부채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농가부채대책은 단지 현재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이 부채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아울러 이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의 대폭적인 연장, 부채특별법 제정, 농산물 가격보장과 유통구조개선,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농작물재해보상을 현실화하고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라.

농작물피해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고작 구호차원에 머물고 있다. 농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단가도 현실에 맞지 않으며 수해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

특히 농작물 피해액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해 농민들의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다.

복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정부의 부담비율을 늘리며 농작물 피해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하라. 그리고 제방둑 붕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지역은 완전한 항구 복구를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라.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결정과 예산배정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농정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형태로 왜곡된 채 자치농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농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전체 농정방향과 정책을 기획하는데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야 하며 소득보장, 농민복지, 기반정비 등을 통해 농민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소득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산지원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22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